

한영통번역전공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

2018. 05. 01. 제정

2020. 05. 01. 개정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학칙 제52조의1에 의거하여 한영통번역전공의 종합 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응시자격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3학기까지의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통산 4회 이상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.

제3조(응시 및 시행시기) ① 종합시험은 매 학기말 이전에 실시한다.

②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당해 학기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응시횟수) ① 종합시험은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4회(과정 수료 전 최초응시 1회 포함)까지 응시할 수 있다.

② 응시기간이 경과하거나 응시회수가 초과되면 학위청구 자격이 상실된다.

제5조(시험과목)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과목은 다음과 같다.

① 종합번역 A->B, 종합번역 B->A(각100점 만점)

② 순차통역 A->B, 순차통역 B->A(각100점 만점)

③ 동시통역 A->B, 동시통역 B->A(각100점 만점)

제6조(합격점수) ① 합격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② 한 과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며 불합격한 과목은 3년 이내에 4회까지 재시험을 볼 수 있다.

제7조(채점위원 및 평가) ① 해당 주임교수가 종합시험 평가에 적합한 외부 교수 또는 전문인사 1인 이상을 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점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의 평균으로 한다.

제8조(고사료) ① 학위청구 종합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원서와 함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고사료는 15만원이다.

③ 불합격한 일부 과목만 응시할 경우 고사료는 과목당 3만원이다.

제9조(합격취소) 종합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에 미달되거나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합격이 자동취소된다.

제10조(합격인정 및 결과보고)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종합시험 결과를 심의한다.

② 학과장은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합격자 명단을 최종 승인한다.

③ 전 과목이 80점 이상이면 ‘국제회의통역’ 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한 과목이라도 80점 미만인 경우 통역 및 전문번역 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출제 및 채점비

문제유형	출제비	채점비	비고
종합번역	각 유형 ¹⁾ 당 80,000원	건당 ²⁾ 7,000원	
순차통역 동시통역		건당 7,000원	

-
- 1) 여기서 각 유형은 두 언어방향을 포함함. 예) 종합번역의 경우 한->영, 영->한 두 세트가 한 유형에 해당됨.
 2) 여기서 건 당은 한 언어 방향만을 포함함. 예) 종합번역의 경우 한->영 번역과 영->한 번역은 개별 건에 해당됨.